

## 2026년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지원 지침

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「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용자」 지원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. 15.  
산업통상부장관

### 1. 목 적

- 이 지침은 도시가스공급배관 건설을 위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(이하 “에특회계”라 한다)의 자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### 2. 적용범위

-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을 위한 에특회계의 자금지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3. 지원규모,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

- 지원규모 : 119억원(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- 지원대상자
  - 한국도시가스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

### ○ 지원대상사업

- 사업자가 설치하는 본관 및 공급관(정압시설 포함)
-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,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공사계획을 승인(신고필)받았거나,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시공감리증명서(시공 감리결과 확인서 포함)을 받은 시설의 설치비
- 단, 에특회계의 조기집행을 위한 “시설공사 시행전 용자”의 경우, 대출추천서와 지침“6-(3)”의 시설공사 시행전 용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 서류를 구비한 시설의 설치비

#### (1) 미공급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

- ①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시·군지역 또는 해당 시·군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평균보급률 미만으로 시·도지사가 추천하는 시·군지역

#### (2) 공급소외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

- ① 수요가수 미달지역 공급을 위한 공급관
  - \* 투자효율 저조 등으로 배관투자가 곤란한 지역 중 해당 사업자가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고 시·도지사가 추천한 지역
- ②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

#### ③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도시가스공급을 위한 공급관

\* [별표1] 참조

- ④ 「발전소주변지역법」 따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

\* [별표1] 참조

○ 지원조건

| 구 분   | 대 출 조 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출비율  | 시설설치비의 80% 이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출한도  | 사업자당 70억원 이내<br>단, 자금집행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에특자금 회계연도 4/4분기부터 추가로 자금을 지원받는 사업자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.          |
| 이 자 율 | 에특회계운용요령에 따른 변동금리에 따름<br>(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따른 대표 대출금리 - 1.25%p)<br>단,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. |
| 대출기간  |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4. 배정금액 및 중점 배정기준

- 배정금액 : 119억원
- 중점배정 지역 및 사업자

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정금액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· 중점배정 지역 및 사업자<br>- 농어촌 지역<br>(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5호, 수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) | 64억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· 그 외 지역 및 사업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5억  | 보급률이 낮은 지방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사업자 우선배정 |

\* 지원대상별 배정금액은 자금집행의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 신청수준 또는 비율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

#### 5. 대출취급기관

- 한국산업은행 등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

#### 6. 대출방법 및 절차

- (1) 산업통상부는 이 지침에 의한 배정기준, 대출한도 및 당해연도 시설투자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사업과 사업자별 배정금액을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시·도 사업자 및 한국에너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별 배정금액은 사업자가 신청하고 시·도가 추천한 공급대상 내역을 토대로 지원목적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부에서 결정 한다.
  - 산업통상부는 사업자가 배정금액을 9월말일까지 집행(인출)하지 않은 경우, 자금배정을 취소하고 협회의 협조를 받아 잔여자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요청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대상사업 및 사업자별로 자금을 조정 배정한다.
  - 이전의 동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사업자는 당해년도 에특회계 배정예정액에서 위반사용액의 1.5배를 차감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자는 당해연도 에특회계 대출과 관련 해당 시설투자계획(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또는 공급소외지역 투자계획서) 자료를 시·도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(3) 시·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투자계획에 대하여 에특회계지원 대상 사업의 적합여부와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계획 등을 고려하고, 사업자의 「배관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」 위반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자별 에특회계 대출 대상시설을 선정 후, 산업통상부에 추천하고 협회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“시설공사 시행전 융자”의 경우, 부문별 에특회계 대출 대상시설의 선정은 공급배관공사의 착공 및 진척상황에 따라 다음 구비서류의 검토를 통해 할 수 있다.

- 미공급지역 공급("3-(1)") :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공급계획서
- 공급소외지역 공급("3-(2)-①②③④") : 구간별 공사계획 승인서
- 에특회계 지원대상시설 선정시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한다.
  - 시·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등 도시가스공급 소외지역의 공급시설 확충에 우선 지원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  - 다만, 요금에 배관투자재원을 반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“도시가스 회사 투자재원 사후관리방안”(지식경제부 가스산업과-537호, '12.04.13)을 위반한 사업자는 제외한다.
  - 시설투자계획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 준공실적분 및 직전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 기성 완료 또는 종료 3개월 이내 시작되어 당해 회계연도로 이어지는 계속공사 중, 직전 회계연도에 지원대상시설로 선정되지 않았고 에특회계 지원실적이 없는 시설을 포함한다.
- (4) 협회는 시·도가 추천하고 산업통상부가 배정한 에특회계 지원대상시설에 대하여 대출추천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시·도에 통보하여야 한다.
  - 사업자별 대출추천 총액은 대출 포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범위(배정 예산의 최대30%)내에서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.
- (5) 사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.
  - 단, “시설공사 시행전 용자”의 경우, 협회의 추천서와 지침 “6-(3)”의 시설공사 시행전 용자의 부문별 대상시설 선정검토의 구비서류로 같음하고, 시설공사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한국도시가스협회 추천서
  - 시공계약서
  - 시공감리증명서(시공감리결과 확인서 포함)
- (6) 대출취급기관은 시설공사의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지급

하여야 한다. 단, “시설공사 시행전 용자”의 경우, 기성전에 대출을 시행하고 시설 공사 완료 후 확인할 수 있다.

- (7)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, 기성확인의뢰일 또는 대출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여를 신청, 자금을 대여받은 날에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(8)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의 대출상황을 익월 7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및 시·도에 통보하고, 한국에너지공단은 용자금의 대여상황을 익월 10일까지 산업통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7. 대출금의 사후관리

- (1) 시·도 및 대출취급기관은 대출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용도관리를 하고 용도 외로 부당사용 또는 유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(2) 대출취급기관은 에특회계가 타목적에 유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유용된 대출원리금을 회수하여 한국에너지공단에 상환하여야 한다.
- (3) 대출취급기관은 “(2)”항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유용 시부터 회수일까지 유용된 대출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가 정하는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한국에너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(4) 용자추천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사업결과를 산업통상부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(5) 시·도, 한국에너지공단, 대출취급기관 및 협회는 이 지침 외에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부 칙 -

- 1. 이 지침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1]

3-(2)-③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\*

| 사업소 | 지자체        | 주변지역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 천 | 연수구        | 송도동                    |
| 평 택 | 평택시        | 포승읍 원정리                |
|     | 화성시        | 우정읍, 장안면               |
| 통 영 | 통영시<br>고성군 | 광도면 안정리,<br>황리,우동리,덕포리 |
| 삼 척 | 삼척시        | 호산리,월천리<br>노경리         |
| 제 주 | 제주시        | 애월읍                    |

\* (가스공사내규)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

3-(2)-④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\*

| 사업소        | 지자체 | 주변지역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고 리        | 기장군 | 장안읍, 일광면       |
|            | 울주군 | 서생면            |
| 새 울        | 기장군 | 장안읍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울주군 | 온양읍, 서생면       |
| 한 빛        | 영광군 | 홍농읍, 백수읍, 법성면  |
|            | 고창군 | 상하면            |
| 월 성<br>신월성 | 경주시 | 감포읍, 양북면, 양남면, |
| 한 울<br>신한울 | 울진군 | 울진읍, 죽변면, 북면   |

\* 발전소주변지역법 제2조에 의거